

서울특별시종로구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7. 3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6월 18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5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
제5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7. 3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여 덕 수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“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및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”를 설치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, 기타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(안 제3조의2)
 -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· 변경 및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심의
 -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심의
 -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論 要旨 (없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음)

7. 審查結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